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 이의신청 기간 변경(안 제7조)
 - 당초 : 10일 ⇒ 변경 : 60일
-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정비(안 제12조)
 - 당초 : 여성위원 40퍼센트 이상 구성
 - 변경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
- 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정비(안 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수당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